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대상에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를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 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대상 신설(안 제17조제1항제4호)
-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규격 세분화 및 품명 신설(안 별표 1)
(현행) 76종 → (개정) 91종 : 2종 규격 세분화, 15종 품목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 단, 1,200리터 한번에 지급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의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수수료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주방용품			
장농	폭120cm이상1쪽	15,000		식탁	대리석 1㎡이상	15,000	
	폭120cm미만1쪽	10,000			1m이상	4,000	
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1m미만	2,000	
장식장 (폭또는높이)	1m이상	6,000			교자상	6인미만	5,000
	1m미만	4,000		대형(4인이상)		2,000	
서랍장	4단이상	4,000		소형(4인미만)	1,000		
	4단미만	2,000		썩크대	1쪽	3,000	
책장 (폭또는높이)	1m이상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1m미만	2,000			높이1m미만	2,000	
신발장	1m이상	6,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1m미만	3,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책상	양수(대형)	5,000		믹서기,분쇄기, 식기(세척)건조기	모든규격	1,000	
	편수(소형)	4,000			인공건조(동력)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전자후라이팬	자연건조(무동력)	2,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모든규격	2,000	
	4단미만	2,000		가전제품			
옷걸이	스탠드형	2,000		TV	25인치 이상	5,000	
의자	사무용, 2인용이상	4,000			25인치 미만	3,000	
	일반의자	2,000		오디오	폭또는높이1m이상	5,000	
쇼파	4인용이상	10,000			폭또는높이1m미만	3,000	
	4인용미만	7,000			스피커1쪽당	2,000	
	1인용	4,000		냉장고	업소용	15,000	
침대 (메트리스 포함)	더블,퀸사이즈	15,000			500 L 이상	10,000	
	싱글	10,000			300L이상 500L미만	6,000	
유아침대	모든규격	5,000			300 L 미만	4,000	
매트리스	더블,퀸사이즈	8,000		에어컨,온풍기	264㎡형이상	8,000	
	싱글	5,000			66㎡형 이상	5,000	
침대 (돌, 옥, 황토)	2인용	30,000			66㎡형미만	3,000	
	1인용	20,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			높이1m미만	2,000	
탁자	모든규격	3,000		전자오락기(게임기)	높이1m이상	10,000	
난방용품					높이1m미만	5,000	
난로	높이1m이상	5,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높이1m미만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보일러등유류통	1톤당	5,000		개인용컴퓨터	본체	2,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모니터	2,000	
			프린터기		2,000		
전기장판온수매트	모든규격	4,000			키보드	1,000	
			스피커(대형)		2,000		
			스피커(소형)		1,000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 다만, 둘 이상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u>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 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u> <u>단, 1,200리터 한번에 지급</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2. 1. 환경부)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 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의4(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수수료의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 비용이 연 32,000천원으로 예상됨
(산출내역 : 평일(249일)×66,000원 + 토·일·공휴일(116일)×132,000원
= 31,746천원)
-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봉투 무상공급을 함에 있어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천원 정도임
(산출내역 : 약 1,500명(‘22년 기준) × 60장(20L) × 58원 = 5,220천원)

4. 작성자

자원순환과 보건7급 강진경 (480-5202)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형 순
	팀 장	문 태 동
	담 당 자	강 진 경 (480-5202)